

일반공급 청약안내

일반공급 1순위 청약 Check Point

-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가능**
•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세대원 등(동거인, 외국인)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 동일한 세대 내 가족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
• 본 아파트 공급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이나, 경쟁발생 시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됩니다.
- 유주택자 1순위 청약가능**
•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재당첨 제한 無**
•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과거 2년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신청이 제한됨)

일반공급 청약 순위 안내

구분	비고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 이하 청약가능)
2순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분

청약 예치금 기준금액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제기동역 아이파크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59A

청약가점제의 점수 산정기준표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가점기준	점수	가점기준	점수	가점기준	점수
1년 미만	2	0명	5	6개월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4	1명	10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늘 때마다 2점 가산	~	2명	15	1년 늘 때마다 1점 가산	~
		3명	20		
		4명	25		
14년 이상~15년 미만	30	5명	30	14년 이상~15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6명 이상	35	15년 이상	17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청약신청자격 변경요건

서울특별시 우선공급시 주소 전입일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청약저축 → 청약예금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변경 후 청약저축으로 재 변경 불가)
청약예금 주택규모 변경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 시,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충족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청약접수일까지 충족

일반공급 청약 자격

구분	내용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당첨자 선정 순서 -1순위 가점제 : (1)지역 → (2)가점 → (3)청약통장 가입기간 → (4)추첨 -1순위 추첨제 : (1)지역 → (2)무주택자 우선공급 → (3)추첨 •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가점제산 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합산 가능('24.03.25. 시행)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 하셔야 합니다.

※ 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표현한 것으로 대표사항으로 문의하시거나, 청약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